

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
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기열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박기열 의원입니다.

지난 5월 25일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「지진·화산재해대책법」 제20조제5항에는 시·도
지역대책본부장으로 하여금 지진재해원인의 조사·분석 및
평가를 위하여 지역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구성·운영할 수
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
규정하고 있습니다.

이에 중앙정부에서는 시·도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관련
조례의 제정 및 개정토록 표준조례안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.

따라서 동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
'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·운영 시기',
'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 및 임무', '조사기간 및
현지조사', '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', '다른 시·도 지원
및 지원요청', '경비지원'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
이를 통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지역의
지진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를 실시하여, 그 결과를 지진
정책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향후 지진으로 인한 재해 경감을
도모하기 위함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
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